전공제 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(II)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성공회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전공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시행세칙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교육과정) 교육과정은 교양과정, 전공탐색과정, 전공과정, 특별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교양과정) 교양과정은 기초핵심교육영역, 미래혁신교육영역, 소양교육영역으로 구분하며, 교양과목의 이수기준은 「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〈별표1〉입학연도별 교양 교육과정 세부 이수 기준」에 따른다.

제5조(전공탐색과정) ① 전공탐색과정의 교과목은 각 전공에서 편성한다.

- ② 전공탐색 교과목은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, 소속 학부에서 한 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하다.
- **제6조(전공과정)** ① 전공과정은 주전공, 복수전공, 부전공(자기주도설계전공 포함), 심화전공, 마이크로전공으로 구분한다.
 - ② 주전공은 최소 42학점, 복수전공은 최소 33학점, 부전공은 최소 21학점, 마이크로전공은 20학점 이내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, 전공 구분별 학점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전공필수 와 전공선택의 학점은 전공별 내규로 정한다.

| | 학부/전공명 | 주전공 | 복수전공 | 부전공 | 심화전공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
| 인문융합 콘텐츠학부 | 영어학전공 | 42 | 33 | 21 | _ |
| | 일어일본학전공 | 42 | 33 | 21 | _ |
| | 중어중국학전공 | 42 | 33 | 21 | _ |
| | 종교와신학전공 | 42 | 33 | 21 | _ |
| 경영학부 | 경영학전공 | 42 | 33 | 21 | _ |
| 사회용합 학부 | 사회학전공 | 42 | 33 | 21 | _ |
| | 경제학전공 | 42 | 33 | 21 | _ |
| | 정치외교학전공 | 42 | 33 | 21 | _ |
| | 사회복지학전공 | 42 | 33 | 21 | _ |
| 미디어 콘텐츠 | 신문방송학전공 | 45 | 33 | 21 | _ |
| | 디지털콘텐츠전공 | 42 | 33 | 21 | _ |
| 융합학부 | 영상콘텐츠전공 | 42 | 33 | 21 | _ |
| 미래융합 학부 | 빅데이터응용전공 | 42 | 33 | 21 | _ |
| | 인공지능전공 | 42 | 33 | 21 | _ |
|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| 소프트웨어융합전공 | 48 | 33 | 21 | 72 |
| 국제학부 | 글로벌디지털경영전공 | 42 | 33 | 21 | |
| | 글로벌미디어아트경영전공 | 42 | 33 | 21 | _ |

③ 전체 학부에 개방하고, 복수전공으로 인정되는 특별교육과정의 학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.

| 전체 학부 | 주전공 | 복수전공 | 부전공 | 심화전공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
| 해외교육과정(중국창) | _ | 36 | _ | _ |
| 해외교육과정(필리핀해외영어교육프로그램) | - | 34 | _ | - |
| 평생교육사과정 | - | 30 | _ | - |

- ④ 심화전공은 단일전공으로 운영하며, 최소 70학점 이상으로 구성된다.
- ⑤ 자기주도설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교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자기주도설계 교육과정을 설계한 뒤 소속학부 학부장 및 교육과정 설계 시 정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자기주도설계전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」에 따른다.

제7조(특별교육과정) ① 특별교육과정은 해외교육과정과 평생교육사과정으로 구분된다.

- ② 해외교육과정은 30학점 이상으로 구성된 복수전공 과정으로 제1유형 또는 제2유형 또는 제3유형을 선택한 이후 5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- 1. 해외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」에 따른다.
 - 2. 해당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전공이수 유형이 소속학부 복수전공과 해외교육과정 복수전공으로 구성된 제2유형으로 변경된다.
 - 3. 다만, 제1유형 또는 제2유형 또는 제3유형의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하고 해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이수 유형을 그대로 인정하고 해외교육과정은 특별과정으로 추가 인정한다.
- ③ 평생교육사과정은 30학점 이상으로 구성된 복수전공 과정으로 전공을 이수한 이후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- 1.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.
 - 2.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전공 이수 유형이 소속 학부 복수전공과 평생교육사좌정 복수전공으로 구성된 제2유형으로 변경된다.
 - 3. 다만, 제1유형 또는 제2유형 또는 제3유형의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하고 평생교육사과 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이수 유형을 그대로 인정하고 평생교육사과정은 특별과정 으로 추가 인정한다.

제8조(전공 선택 유형 및 시기) ① 전공 선택은 2학기차 재학생이 학사일정에서 정한 전공신청 기간에 이수 신청한다.

- ②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선택하되, 반드시 소속학부에서 한 개 이상의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.
- ③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 이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 - 1. 제1유형: 주전공, 부전공으로 구성되며 3학기부터 이수한다.
 - 2. 제2유형: 복수전공1, 복수전공2로 구성되며 3학기부터 이수한다.
 - 3. 제3유형: 심화전공(단일전공)으로 3학기부터 이수한다.

- 4. 제4유형: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을 이수하는 학생이 부전공 이상의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위해 설계된 교과과정을 6학기부터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.
- ④ 제4유형은 5학기 중 전공 선택 기간에 이수 신청을 한다.

제9조(편입학생의 전공 선택 유형 및 시기) ① 입학하는 학기에 전공 이수 신청을 한다.

② 전공 선택은 소속 학부에서 주전공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, 선택한 전공의 졸업요건을 따른다. 다만, 희망자의 경우 제8조제3항의 네가지 전공 이수 유형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.

제10조(전공 변경) ① 전공 변경은 6학기차 진입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속학부 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전공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③ 변경 이전 전공에서 취득한 전공 과목은 변경 이후 전공의 주임교수 승인을 거쳐 인정할수 있는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과목은 교양으로 변경된다.

제11조(2024학년도 전 입학생의 소속 학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2024학년도 전에 입학한 학생이 2024학년도에 개편된 학부의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하단의 표와 같이 재학 중 해당 학기차에 개편된 학부로의 변경을 통하여 전공 신청이 가능하다.

| 학년도/학기 | 2024 | 학년도 | 2025학년도 | | 2026학년도 | | 2027학년도 | | 2028학년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| 1학기 | 2학기 | 1학기 | 2학기 | 1학기 | 2학기 | 1학기 | 2학기 | 부터 |
| 2024학년도 전 입학 재학생의 해당 학기차 | 1 학기차 | 2 학기차 | 3 학기차 | 4 학기차 | 5 학기차 | 6 학기차 | 7 학기차 | 8 학기차 | 제한없음 |

- ② 소속 학부의 변경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.
 - 1. 인문융합자율학부 입학생은 인문융합콘텐츠학부로 변경할 수 있다.
 - 2. 사회융합자율학부 입학생은 경영학부 또는 사회융합학부로 변경할 수 있다.
 - 3.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입학생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로 변경할 수 있다.
 - 4. IT융합자율학부 입학생은 소프트웨어융합학부로 변경할 수 있다.
 - 5. 미래융합학부와 국제학부(외국인 전담학과)로는 변경할 수 없다.

제12조(내규) 각 전공별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